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0,651,652	17,719,550
일반회계	549,746,767	16,492,403
특별회계	40,904,885	1,227,147
공기업특별회계	7,581,953	227,459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581,953	227,459
기타특별회계	33,322,932	999,688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27,311	42,8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0,635	25,21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79,595	74,38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69,844	23,095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1,903,972	357,11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7,026,778	210,803
수질개선 특별회계	8,874,797	266,244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895,95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29,59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